

◎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0-266호

도시관리계획 [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(재정비)]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 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2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08.03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「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3호(2010.09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27호(2017.11.23)로 변경 결정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

양천구 공고 제2019-788호(2019.06.27.)로 열람공고 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2019년 제15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양 천 구 청 장

1. 재열람사유 :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 반영에 따른 계획(안) 변경
2. 열람기간 :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
3. 열람장소 :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본관 6층, ☎ 2620-3509)
4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 -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	182,150	-	-	최초결정일 (1996.12.12.)
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	양천구 신정동 1031-1호 일대	-	감)15,245.9	166,904.1	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사항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라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- 1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해제	특별계획구역1 (신정제일시장일대)	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	7,558	감) 7,558	-	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
해제	특별계획구역2	양천구 신정동 1049-1 일대	25,407	감) 25,407	-	구역내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

2)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가능구역 (신정제일시장일대)	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	-	증) 7,558	7,558	

3)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마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4. 의견제출 :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
(별도서식 없음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2620-3509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도서 비치 :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및 양천구청 도시계획과, 해당동 주민센터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
의하여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양 천 구 청 장